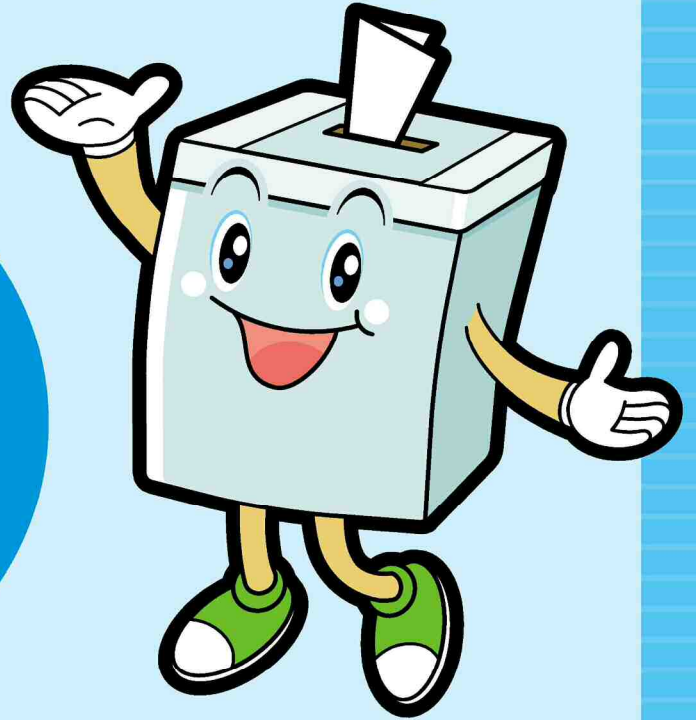


가와사키시의 주민투표 제도

찬성

반대

주민투표제는 시정 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란?

- 현재 또는 장래의 주민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면서
- 주민 사이 또는 주민·의회·시장 사이에 중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주민에게 직접 찬성 또는 반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는 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이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법령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사항 등, 조례가 정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누가 투표할 수 있는가? (투표 자격자)

본 도시에 주소를 갖고 있는 만 18세 이상으로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본 도시의 주민 기본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일본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
- 일본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영주자, 특별 영주자 또는 일본에 재류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주민 기본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주민 기본 대장의 기록 기간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8일 이전에 외국인등록 원표에 등록되어 있던 기간도 통합 계산 됩니다.)
단,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포함)은 투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 주민투표의 발의는?

- 주민, 의회, 시장의 삼자가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 자격자)은 투표 자격자 총수의 1/10 이상의 서명을 모아 시장에게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 수집 후, 실시를 청구하면 시장이 의회에서 협의를 합니다.
(시장이 발의한 경우도 의회에서 협의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합니다.

투표일은 원칙적으로 실시를 고시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후에 시내 전역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같은 날로 합니다.
※긴급성 등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단독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도 있습니다.

☀️ 투표 방법은?

- 투표 용지에 인쇄된 「찬성」, 「반대」 의 어느 한 쪽에 ○를 쳐서 투표를 합니다.
- 투표일 고시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의 전날까지 기일전 투표나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고, 그 외에 몸이 불편한 분 등은 전자 투표나 대리 투표의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 모든 사람이 알기 쉽게.

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투표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투표 자격자에게 제공합니다.

☀️ 주민투표운동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 선거기간과 견칠 때 등, 일정한 경우에는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매수, 협박 그 외 부정 수단으로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구속 또는 간섭하는 행위 등, 조례가 정하는 일정한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투표 결과는 존중되어 시의 정책 결정에 활용됩니다.

의회와 시장은 투표 결과를 존중합니다.